

의안번호	2216383
의 퇴 인	신성범의원
회 답 일	2026.4.20.
추계번호	26D0459

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조(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)	교정시설 조성부지의 선정과 조성 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(이하 “조성사업위원회”라 함)를 둠 (제1항) 조성사업위원회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교정시설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(제2항) 조성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, 법무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, 종전부지 및 조성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되 조성후보지 거주 주민 중에서 1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함 (제3항)
2	안 제9조(부담금의 면제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,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「초지법」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,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담금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초지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
3	안 제10조(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)	법무부장관은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함 (제1항)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조성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(제2항)
4	안 제15조(부담금의 감경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,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, 「초지법」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및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초지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음
5	안 제16조(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)	국가는 지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(부담금의 면제)	
3	안 제10조(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)	
4	안 제15조(부담금의 감경)	
5	안 제16조(국고보조금의 인 상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안 제5조(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)

-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조성사업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위원회 운영경비로 인한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- 다만, 조성사업위원회는 조성 대상이 되는 교정시설마다 설치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조성사업위원회의 수 및 연간 회의 횟수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안 제9조(부담금의 면제) 및 제15조(부담금의 감경)

- 교정시설 조성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원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을 감경하게 되므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나, 신규 교정시설 조성 시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, 면제규모와 감경비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재정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곤란함

□ 안 제10조(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)

-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전체 조성부지 중 지원시설이 차지할 면적 및 지원시설의 종류·개수·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, 공청회 참여 대상 주민의 수 및 공청회 개최 부대비용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안 제16조(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)

-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,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